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간주규정 신설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91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간주규정 신설 ..... | 2 |

##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1일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항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간주규정 신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으면 현행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② (생략)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br>-----<br>-----                                                                                                                                             |

|                                                                                                                                                                                                                                                                                       |                                                                                                                                                     |
|---------------------------------------------------------------------------------------------------------------------------------------------------------------------------------------------------------------------------------------------------------------------------------------|-----------------------------------------------------------------------------------------------------------------------------------------------------|
| <p>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br/>-----,<br/>-----<br/>-----.</p>                                                                                                        |
| <p>④·⑤ (생략)</p>                                                                                                                                                                                                                                                                       |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
|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p> <p>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br/>-----<br/>-----<br/>-----<br/>-----<br/>-----<br/>-----<br/>-----.</p> |
| <p>1. ~ 16. (생략)</p>                                                                                                                                                                                                                                                                  | <p>1. ~ 16. (현행과 같음)</p>                                                                                                                            |
| <p>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p>                                                                                                                                                                                                                                    | <p>17. 제31조제5항-----<br/>-----<br/>-----</p>                                                                                                         |
| <p>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p>                                                                                                                                                                                                                                       | <p>18. 제31조제6항-----<br/>-----</p>                                                                                                                   |
| <p>19. ~ 26. (생략)</p>                                                                                                                                                                                                                                                                 | <p>19. ~ 26. (현행과 같음)</p>                                                                                                                           |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과정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sup>1)</sup>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도급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벌칙 제외)가 도급인에게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sup>.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자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sup>3)</sup>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2)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도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 규정을 두고 있음<sup>4)</sup>.

이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sup>5)</sup>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과 더불어 「화학물질안전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중복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sup>6)</sup>가 발생할 수 있음.

### [ 도급신고 및 도급승인 제도 비교(요약) ]

| 구분   | 도급신고(화학물질관리법)                                   | 도급승인(산업안전보건법)                                         |
|------|-------------------------------------------------|-------------------------------------------------------|
| 목적   |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과정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 •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자 도입                      |
| 대상   |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도급                                 | • 1% 이상 황산, 질산, 염산, 불산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작업    |
| 제출서류 | • 도급·수급인의 생산품, 매출액<br>• 도급계획서<br>•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 • 도급대상작업의 공정관련서류<br>• 안전보건관리계획서<br>•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 |

개정안은 도급승인과 도급신고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도급신고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4)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에서는 혼합물 중 함량 10% 이상의 황산, 1% 이상의 불화수소, 10% 이상의 질산, 10% 이상의 염화수소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6) 예를 들어, 중량비율 15%의 황산을 취급하는 설비 개조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도급승인 신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도급신고를 각각 하여야 함.

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은 행정청의 사전 심사와 승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행적 절차로서, 단순한 행정청의 수리로 완료되는 현행법의 도급신고보다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높은 제도임. 아울러 도급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 등 보다 엄격한 안전확보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개정안의 체계는 법리적·행정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승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개정안 제31조제3항 수정의견 ]

| 개 정 안                                                                                                                             | 수정의견                                                   |
|-----------------------------------------------------------------------------------------------------------------------------------|--------------------------------------------------------|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포 | ③ -----<br>-----<br>-----<br>-----<br>-----<br>----- 포 |

